

# 골재값 폭등에 난감한 건설사

### 평창·동해안 공사현장 최고 두 배 급등 ... 수익성 악화 비상

A건설업체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210억여원짜리 공사를 수주해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 들어 골재가격이 크게 올라 골치를 앓고 있다.

올 들어 골재업체가 지난해까지 1㎡ 당 6,000원선이었던 골재값을 40% 가까이 오른 8,500원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간신히 사정 끝에 7,300원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

B건설업체는 지난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동해안 연안개발사업 380억여원짜리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올 들어 동해안 골재값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100%까지 오른 가격에 호가되면서 공사는 커녕 아직까지 골재값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더구나 방파제 기초공사에 쓸 골재라 아무거나 막 쓸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가장 방파제공사를 하기 좋은 4, 5월에도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와 동해안 연안개발사업 공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골재값이 크게 요동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골재가격은 조

달청이나 물가정보지 등에 게재된 가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인상 폭은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3%) 등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과 동해안 등에 각종 공사가 이어지면서 골재가 품귀 현상을 보이며 골재값이 공시가격과 달리 크게 오르고 있어 조달청 가격 등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2~3년간은 공사가 많은 이들 지역의 골재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공사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박중홍기자 pjh@kwnews.co.kr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선 권고대상' 오해와 진실

##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제한입찰’은 규제대상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기요인 과제 중 하나로 지자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선을 권고한 이후 시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

개선 권고 대상 조례를 둘러싸고 오해가 빚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0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가 개선을 권고한 조례 대상은 △지역업체 50~70% 이상 의무 하도급 △지

역 내 장비·자재 50~70% 이상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50% 이상 우선 고용 △민간 개발공사 지역업체 참여·직접시공 확대 △건설업체 등록 일정기간(1년) 경과 후 입찰 참가 허용 등이다.

이런 조례 개선 권고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제한입찰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제한입찰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대응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대상 조례는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 공사 관련 규제로 지역전

### 원도급 아닌 하도급 관련 규제 공정위 “전문업체 간 경쟁 제한하는 조례” 선 그어

문건설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조례의 경우 지난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 하도급제 폐지로 상위법령에 근거 조항이 사라졌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운용하면서 사실상 의무 하도급제가 부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제한하고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로 운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 내 장비·자재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의 조례는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례에 따른 지역업체 차별적 우대가 인건지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간 시장 진입을 서로 봉쇄해 역의 업체들은 공사 수주를 위해 폐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휴면건설업체를 인수하는 등 우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에는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3년 재검토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지자체 발주공사에 국한해 우대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유로 역의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군·구 단위의 조밀한 규제를 없애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조례를 운용하게 되면 지역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대형업체에 의한 지방건설시장 잠식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mp@

# ‘실적공사비 배제’ 지자체 조례개정 본격화

〈300억원 미만 공사〉

서울시 첫 스타트  
적정공사비 기반 다져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스타트를 끊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개정된 상위 규정에 따라가지 못해 빚어지는 혼선을 막고 적정공사비에 대한 발주기관 인식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시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제8조에서는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변경해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배제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 조례는 부칙으로 제8조의 ‘추정가격 100억원’을 2016년 12월31일까지는 ‘추정가격 300억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는 실적공사비 단가 배제가 명확히 정리됐다.

상위 규정 개정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조례가 예전 기준으로 남아있으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행자부 예규 개정 직후부터 이를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건의했고, 이번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한자리 모인 아시안리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모디 인도 총리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심론포럼스 개최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있다. ▶관련기사 18면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상위 규정인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이 지난 3월5일 개정·공포된 데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개정 예규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는 300억원 미만까지 적용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은 지난 3월5일 행자부 예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에서 이뤄졌다.

한편 건설 서울시회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에 아직 ‘실적공사비’라는 명칭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김정석기자 jskim@



# ‘소규모 복합공사 논란’ 불안한 소강상태 돌입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건설업계의 대응 수위에 따라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휴전상태’라는 분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곧바로 시행 절차를 밟는 대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더 듣고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지역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3000여명의 건설인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부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업체 중 중소기업체가 98% 이상을 차지

###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오늘 만료 국토부, 의견 추가청취 후 최종 방침 확정 나설 듯

### 향후 정책·업계 대응 따라 재점화 가능성 남아있어

하고 수주의 78.7%가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라며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 범위를 10억원과 3억원 사이로 ‘축소 확대’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방침에 따라 취소했던 후속 집회도 정책 재추진 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도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정책 방향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한

다는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가 10억원 이하 공사의 대부분이 전문건설업계로 이전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20일 이후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철회되거나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면 대규모 장외집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오는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앞 주차장에 집회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국회 앞 여의도 공원에도 다음달 중순까지 집회신청이 돼 있다.

국토부는 현재 태스크포스(TF) 등의 방식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kth@

## 오늘의 주요 일정

- ▶ 금감원, 올해 3월 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일제 단속
-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지원



건설업계 의존성 키우는 정부

## ‘밥그릇 싸움’ 부채질 정책 수두룩 발주처 재량 확대, 창의 증진시켜야

건설산업은 흔히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부른다. 특성상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업체계는 적절히 운용하면 효율성이 탁월하지만 자칫 역할분담이 헝클어질 경우 참여 주체 수 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식이다. 정부가 건설산업 주체 간 경계를 교묘히 허무는 방식으로 갈등을 키우면서 건설산업의 정부 의존성을 키워 왔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면허 제도라는 진입 자격제도를 통해 건설산업을 관리하고 발전시켜왔다. 크게 시공업과 용역업, 다시 시공업은 종합건설업(5개 업종)과 전문건설업(25개 업종)으로 나뉜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아예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 제한은 2007년 풀렸지만 시공업과 건축설계업 간의 겸업 제한은 그대로다.

종합-전문 간 업역을 나누는 예외조항은 업역 갈등을 키우는 불씨다. 소규모 복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공사의 부대공사 등의 해석과 발주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생존권과 직결된 입낙찰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건설산업 주체들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제도개선을 시작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 주체 간 갈등은 다시 한 번 고조된다. 종합심

사낙찰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업계는 정부의 입만 쳐다본다.

건설산업의 입낙찰 제도는 원칙 없이 시류를 따라 흔들려 왔다. 입낙찰제도는 수요자가 최적의 공급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태생적으로 시장적 특성이 짙다. 하지만 한국의 입낙찰 제도는 공공적 가치를 보다 많이 반영하려다 보니 규제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등급제한 제도, 지역제한 제도, 도급한도 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소건설업 보호 제도들은 지나치게 물량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밥그릇 싸움’을 부추겨 왔다.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를 두고도 무게추가 오락가락한다.

이처럼 무게감이 떨어지는 입낙찰 제도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업계의 불신만 키운다. 오락가락하는 제도 앞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건설 주체들은 끝없이 갈등하고 정부는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입찰 제도는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산업 주체들의 정부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최대한 자제해 시장 자율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의 제도도 발주처 재량에 맡겨 민간의 창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 중소·중견업체 1034社 ‘중심제 개선’ 2차 건의



1000개를 넘는 중소기업과 중견건설사들이 종합심사 낙찰제 운용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34개 중소기업과 중견건설사들은 ‘종합심사 낙찰제 운용기준에 대한 건설업체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 초 682개 중소기업과 중견건설사들이 중심제 시범사업과 관련, 일부 건설업체의 수주 독과점과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시공실적이 대형사에 비해 부족한 시공능력평가액 10억원 내 일부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재부와 국토부를 시작으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주요 발주처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22개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시공실적 산정방식과 인정기준 개선, 배치기술자 교체, 시공평가 배점한도 적용, 공동도급 가점 등을 제안했다.

먼저 시공실적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만점 기준이 300%였으나, 중심제는 500%로 강화한 것은 건설업체의 변별력

## 1차보다 참여사 크게 늘어 기재부·국토부에 의견 제출

강화라는 취지라고 하지만, 정부가 수주 독과점과 담합 발생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강화한 심사기준은 입찰 참가 업체 수를 한정시켜 실적사 파악만으로도 낙찰업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연도별 차등평가(가중치)가 아닌 연도별 균등평가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만점 기준 500%를 완화하고 공동도급사 실적에 지분을 적용하지 않는 단순합산 평가를 통해 낙찰 가능한 업체 수를 늘려 특정업체의 특혜 방지와 수주 독과점, 담합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14년 동안 시행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통과한 업체라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증명된 만큼 시공실적 인정기준도 현재의 PQ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치기술자 평가는 현장대리인 등 배치기술자 교체가 안 된다면 기술자를 많

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사전 인력고용에 따른 입찰비용이 증가하므로 현장대리인과 시공·품질·안전에 배치한 기술자는 동일공종 그룹 내에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말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지침’ 개정으로 종전과 개정 이후의 시공평가방법과 내용이 달라 건설업체 및 각 발주기관의 시공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새 지침 적용 전 시공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간을 발주기관별로 3~10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가기간을 부실별점과 같은 2년으로 적용해 과거보다는 최근 위주로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다른 발주기관의 시공평가 결과와 SOC 및 민간, 해외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들과의 공동도급 가점제도(최대 5점)를 활용해 낙찰 가능한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를 활성화시켜 특정업체의 수주 독과점과 담합 등의 문제점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